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41
----------	------

2016년 12월 19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 시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16년 8월 17일
- 다. 상정일자 : 제27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6년 9월 5일 상정·보류)
제27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6년 12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기후환경본부장 유재룡)

가. 제안이유

- 양천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자원 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사항으로,
-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위탁운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 내용

1) 사업개요

- 시설명 : 양천자원회수시설
- 소재지 : 양천구 안양천로 1121(목동)
- 부지면적 : 16,914.1 m^2
- 시설규모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400톤/일(200톤/일 × 2기)

- 처리권역 :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 주 용 도 :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소각열 회수하여 자원화
- 주요장비 : 소각설비, 재처리설비, 연소가스냉각설비 등

2)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2017. 1. 1 ~ 2019.12.31)
- 위탁사무 : 양천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에 전반적인 사항
 -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반입 및 처리
 - 소각, 환경, 발전설비 등 관련 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
 - 고압증기 및 전력의 생산·판매
 - 자원회수시설의 부대시설 유지관리
 -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비, 용역, 물품 등 계약·관리 일반사무처리
 - 기타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등
- 소요예산(비정산비) : 10,842,025천원/3년(2014~2016년)

3) 민간위탁 추진현황 및 추진방법

- 추진현황
 - '96.02.28. : 양천자원회수시설 준공
 - '96.03.01. ~ '99.03.31. : 1차 위탁운영(SK건설)
 - '99.04.01. ~ '02.03.31. : 2차 위탁운영(SK건설)
 - '02.04.01. ~ '05.03.31. : 3차 위탁운영(한국시거스)
 - '05.04.01. ~ '08.03.31. : 4차 위탁운영(한국시거스)
 - '08.04.01. ~ '11.04.30. : 5차 위탁운영(한국시거스)
 - '11.05.01. ~ '13.12.31. : 6차 위탁운영(한국시거스)
 - '14.01.01. ~ '16.12.31. : 7차 위탁운영(한국시거스)
- 추진방법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4)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필요성
 - 생활폐기물 반입·처리 및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
- 기대효과
 -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 및 예산절감 효과
 - 전문적인 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관리)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나. 예산조치 : 2017년도 예산편성조치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선희)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함) 제4조의3에 따라 위탁운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위탁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의회 동의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해당사무를 재위탁¹⁾ 또는 재계약²⁾ 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를 갈음하였으나,
민간위탁 사무의 의회 동의 절차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하여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매 4회 차마다 의회 동의를 받는 것으로 민간위탁조례가 개정('16.1.7)됨에 따라 본 동의안이 제출된 것임.
- 서울시는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와 소각열 회수를 통한 대체 에너지 활용 목적으로 4개소에 자원회수시설³⁾을 설치하여 공동이용하고 있으며, 시설의 운영·관리는 3년 단위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하고 있음.

1)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2)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을 850℃ 이상 1100℃의 고온으로 연소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폐열(400℃ 이상)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한 후 120℃ 정도로 낮아진 고압증기를 주변의 지역난방으로 공급하는 등 대체에너지로 활용하게 하는 시설

<표 1> 자원회수시설 현황

시설명	규모 (톤/일)	공동이용 자치구	최 초 위탁일	민간위탁사업자 (현 회차, 기간)
양 천	400	양천, 강서, 영등포	'96.3.1	한국시거스 (7회차, '14.1.1~'16.12.31)
마 포	750	마포, 중구, 종로 용산, 서대문구	'06.6.1	한라산업개발 (5회차, '15.6.1~'18.5.31)
노 원	800	노원,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동대문	'97.2.1	한불에너지관리 (7회차, '15.2.1~'18.1.31)
강 남	900	강남, 서초, 송파, 성동, 광진, 동작, 강동	'02.1.1	한국시거스 (5회차, '14.1.1~'16.12.31)

※ 구로(광명자원회수시설 이용), 은평(소규모 자체 시설 이용)

- 양천자원회수시설⁴⁾은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소각 처리하기 위하여 400톤/일 규모로 건설되어 1996년 3월 1일 최초 민간위탁 이후 7차에 거쳐서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양천자원회수시설을 포함한 4개소의 자원회수시설은 구조가 복잡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현행과 같이 외부 전문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관리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 계 법 령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4) 공사기간 : '92.12.31 ~ '96.2.28, 총사업비 : 31,815백만원

1. 한국환경공단

1의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해당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별표 4의4의 기준에 맞는 자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영 제35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청장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3. 자원회수시설을 설계·시공한 자,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실적이 있는 국내외업자, 자원회수시설을 설계·시공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외국업체와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6.1.7.]

5.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 : 자원회수시설 위탁에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서울에너지공사가 자원회수시설을 위탁 운영·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

- 답변 : 설립되는 서울에너지공사가 안정화된 이후 서울시 4개 자원회수시설을 서울에너지공사가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6. 토론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341
----------	------

제출년월일 : 2016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양천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자원 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사항으로,
- 나. 양천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위탁운영사업자를 선정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현황

- 시설명 : 양천자원회수시설
- 소재지 : 양천구 안양천로 1121(목동)
- 부지면적 : 16,914.1 m^2
- 시설규모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400톤/일(200톤/일 × 2기)
- 처리권역 :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 주 용 도 :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소각열 회수하여 자원화
- 주요장비 : 소각설비, 재처리설비, 연소가스냉각설비 등

나.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017. 1. 1. ~ 2019.12.31.)
- 위탁사무 : 양천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에 전반적인 사항
 -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반입 및 처리
 - 소각, 환경, 발전설비 등 관련 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
 - 고압증기 및 전력의 생산·판매
 - 자원회수시설의 부대시설 유지관리
 -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비, 용역, 물품 등 계약·관리 일반사무처리
 - 기타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등
- 소요예산(비정산비) : 10,842,025천원/3년(2014~2016년)

다. 민간위탁 추진현황 및 추진방법

○ 추진현황

- '96.02.28. : 양천자원회수시설 준공
- '96.03.01. ~ '99.03.31. : 1차 위탁운영(SK건설)
- '99.04.01. ~ '02.03.31. : 2차 위탁운영(SK건설)
- '02.04.01. ~ '05.03.31. : 3차 위탁운영(한국시거스)
- '05.04.01. ~ '08.03.31. : 4차 위탁운영(한국시거스)
- '08.04.01. ~ '11.04.30. : 5차 위탁운영(한국시거스)
- '11.05.01. ~ '13.12.31. : 6차 위탁운영(한국시거스)
- '14.01.01. ~ '16.12.31. : 7차 위탁운영(한국시거스)

○ 추진방법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라.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필요성

- 생활폐기물 반입·처리 및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

○ 기대효과

-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 및 예산절감 효과
- 전문적인 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관리)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나. 예산조치 : 2017년도 예산편성조치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팀 최 영 우(☎2133-3683)